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17
----------	-------

발의연월일 : 2026. 8. 18

발 의 자 : 서왕진 · 김준형 · 신장식
강경숙 · 김선민 · 박은정
이해민 · 차규근 · 김정호
정춘생 · 백선희 · 황운하
정혜경 의원(13인)

제안이유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이 임의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고시원 · 쪽방 등 준주택 또는 비주택 거주자와 같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 ·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에너지복지 사업에 준주택·비주택 거주자 지원과 에너지 공급, 주거 에너지 성능 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임차인 보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안 제16조의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7호의2) 중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말한다.

13. “에너지빈곤”이란 가구의 소득 수준, 주거 여건, 에너지 가격, 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냉방·난방·조명·취사·온수 등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최수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4. “에너지복지”란 에너지빈곤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5항 중 “빈곤층”을 “빈곤층,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최소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은 기후위기의 영향, 에너지 가격 수준 및 국민의 건강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절별 적정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여름철 및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습도 기준을 포함한다)
2. 의료기기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전력의 안정적 공급
3. 조리·위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의 공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를 “및 주거 에너지 성능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 추진을 위하여”로, “소외계층에”를 “소외

계층 및 에너지빈곤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를 “간이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거주자 및 비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거주자 등 주거 형태의 특성상 에너지이용권 사용이나 설비 지원이 어려운 거주자에 대한 지원

1.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
2. 주거 형태 및 에너지 성능에 관한 사항
3.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 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와 그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기 의존 등 건강 취약요인에 따른 에너지 수요 현황
5. 에너지이용권 미사용 및 지원 미신청 현황과 그 사유
6. 그 밖에 에너지빈곤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임차 가구에 대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련 시책을 연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u>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말한다.</u>
<u>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u> <u>8. ~ 10. (생 략)</u> <u><신 설></u>	9. ----- <u>에너지이용 소외계층</u> ----- ----- ----- ----- ----- ----- ----- ----- 10.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3. “에너지빈곤”이란 <u>가구의 소득 수준, 주거 여건, 에너지 가격, 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냉방·난방</u>

<신 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 략)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신 설>

· 조명 · 취사 · 온수 등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4. “에너지복지”란 에너지빈곤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빈곤층,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
-----.

제4조의2(최소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② 제1항에 따른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은 기후위기의 영향, 에너지 가격 수준 및 국민의 건강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절별 적정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여름철 및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습도 기준을 포함한다)
2. 의료기기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전력의 안정적 공급
3. 조리·위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의 공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 <신 설>

3.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

다만,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2. -----
및 주거 에너지 성능의-----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거주자 및 비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거주자 등 주거 형태의 특성상 에너지이용권 사용이나 설비 지원이 어려운 거주자에 대한 지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의 추진을 위하여 -----

-- 소외계층 및 에너지빈곤에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간이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

1.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
2. 주거 형태 및 에너지 성능에 관한 사항
3.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 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와 그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기 의존 등 건강 취약 요인에 따른 에너지 수요 현황
5. 에너지이용권 미사용 및 지원 미신청 현황과 그 사유

<u><신 설></u>	<u>6. 그 밖에 에너지빈곤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신 설></u>	<u>⑤ 정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임차 가구에 대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련 시책을 연계하여야 한다.</u>